

수신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2-89 용산소방서 외 12개소
(경유)

제목 건축물의 급수관 수질검사 안내

1. 서울시 상수도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귀 건물주 및 관리인께 감사드립니다.
2. 수도법 제33조 및 시행령 51조에 의거 귀 건물의 급수설비에 대하여 2년에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따로 붙임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시어 급수관 상태검사를 받으신 후 결과물(시험성적서)을 우리사업소로 2018.2.14.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따로 붙임 :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1부, 끝



주무관 김현중 급수운영과장 01/29 유응일

철조자

시행 급수운영과-1820 (2018.1.29.) 접수 ()
 우 /
 전화 02)3146-2817 /전송 02)3146-2839 / / 대시민공개